

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 기 대 의원

존경하는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
김기대 의원입니다.

지난 7월 5일 본 의원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본 제정안의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,

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들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주요내용으로 가입대상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하여,

시장이 보험기관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, 보험료를
보험기관에 직접 납부토록 하고,

보험금의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및
구비서류를 갖춰 보험기관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
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,

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
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